

- 2025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 세종 지역 과제 모집 공고

(재)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지역별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세종 지역 과제를 모집하오니,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재)세종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5년 지역 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 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예비 ICT·SW선도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명) 2025년 세종 선도기업사업화지원 사업
- (사업목적) 연구개발역량 및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 내 예비선도SW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수요에 맞춘 자율형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핵심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육성

* 예비SW선도기업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SW기업

- (사업기간) 2025. 1. ~ 12.

- 하위 수행기업 사업기간: 2025. 3. ~ 2025. 11.

* 전년대비 매출 및 고용 성장률 확인을 위해 성과 인정 대상기간은 2025년 1월~12월 까지로 함

○ (주요 사업 내용)

- 지역내 핵심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고도화, 국내외 마케팅, 테스트, 기술·경영 컨설팅, 투자유치 등 기술수요에 맞춘 지원으로 단기간에 성과 창출 도모

○ (지원분야) 일자리창출형, 기술사업화형, 기업성장형 中 택1 필수

- (지원내용)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분야(일자리창출형, 기술사업화형, 기업성장형)를 선정하고, 이행과제를 사업비 범위 내 자율제안

구분	지원내용 세부내용(예시)
경영	경영법률 컨설팅, 투자유치, 네트워크 지원, 산학연 및 지역 연계
기술고도화	테스트, 인증, 특허, 기술자문
해외시장 진출	현지화 전략, 전시회 참가, 온라인 전시

3 지원 상세내용

○ (공고기간) 공고일 ~ 2025. 2. 11.(화) 18:00 까지

○ (지원규모) 2.8억원 내외*

※ 민간부담금 : 총 지원사업비의 20%(현금, 현물 포함), 현금은 10% 이상

*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과제 수) 1개 과제 이내*

* 지역에서 직접 1개 과제 선정

○ (사업목표) 공통 성과지표* 외에 지원분야 관련 성과측정이 가능한 도전적 세부 성과지표 제시

구분	중점분야 세부 평가지표(예시)
일자리 창출형	청년고용 10억당 0명, 신규채용 정규직 비율 00%이상 달성시
기업 성장형	직전 3개년 연평균증가율 대비 00%이상 달성 해외수출 0억원이상 또는 0건 이상
기술 사업화형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 00건, 해외 특허 0건

* 공통 성과지표 : 일자리 창출 계획 작성 필수, 순 고용인원(국바자방비 10억당 13명,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신청자격) 예비선도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SW사업자

- SW사업자 지원요건

선도기업 선정 자격

(주관기업) 공고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세종시인 SW기업

※ SW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 SW 관련업 또는 SW사업자 신고확인서 보유 기업

(참여기업) SW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 주관기업(세종시 SW기업) 단독으로 수행가능
 ※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할 경우, 주관+참여 구성의 50%이상 세종시 소재 기업으로 구성해야함
 ※ 재단의 선정 규정 방식 및 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견기업 지원불가
- 연구소, 대학 등 협력기관의 경우 SW사업자 필수사항 아님

- 예비선도기업 세부요건

☞ **자격요건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SW기업**

연구개발 혁신역량	5점	4점	3점	2점	1점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이상	5%이상~10%미만	3% 이상~5%미만	0%초과~3%이하	없음
연구개발 인력비율	30% 이상	20%이상~30%미만	10%이상~20%미만	0%초과~10%이하	없음
특허	10개 이상	6개~10개 미만	2개~5개 미만	1개	없음
성장단계	5점	4점	3점	2점	1점
매출액 증가율	30% 이상	20%이상~30%미만	10%이상~20%미만	0%초과~10%미만	없음(-성장)
매출액 규모	50억 이상	30억이상~50억미만	10억이상~30억미만	3억초과~10억미만	3억 미만
고용 규모	100명 이상	30인이상~100인미만	10인이상~30인미만	5인초과~10인이하	5인 미만

<연구개발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별 배점 및 구분>

1) 연구개발 투자비율 =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합계액 / 3개년 매출액** 합계액('21~23년 또는 '22~24년 중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연구개발비** : ①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의 개발비(증가액) + ②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③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④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예시) 최근 3개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가능한 연평균증가율로 산정(단 '23년 창업기업의 경우 2개년 ('23년과 '24년) 매출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산정 가능)

** **매출액**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증명원 등 기재된 금액
 (단, 국고보조금 수취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성장단계 매출액과 동일기준)

2) 연구개발인력 비율 : 연도말 연구개발인력*수/연도말 총 종사자수**

* **연구개발인력** : 조직내에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인원을 작성하되 단순사무보조, 지원인력 등은 제외

(예시) 연구개발인력은 R&D분야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력자(3년이상) 또는 석박사급 인력에 준하는 인원수, 이외 연구개발인력이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총 종사자수** : 2024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 인원(성장단계 고용규모와 동일기준)

3) 특허 : 최근 3개년간 출원, 등록일자로 명시된 국내 해외 특허
 ('21~23년 또는 '22~24년 중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추진절차

○ 과제 선정절차(안)

추진 절차		주요 내용	수행주체
1단계	모집 및 접수 ~'25.2.11.(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모집공고 접수완료 온라인 접수 및 신청자격 요건 등 적격여부 검토 	세종테크노파크 ↓ 지원기업
	1차(서류검토) '25.2.12.(수) 2차(발표평가) '25.2.13.(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검토) 과제 중복성 등 담당자 제출 서류 검토 (발표평가) 과제별 발표평가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1개 과제 선정 	
2단계	최종 확정 및 협약 체결 '25.2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지원과제, 지원규모 확정 선정 과제 전담기관(NIPA) 보고 세종 전략산업 분야 및 실행계획 기반 사업 계획 수정 및 보완 최종 사업계획서 확정 및 협약 체결 	지원기업 ↓ 세종테크노파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25년부터 “지역 집적 선정”으로 최종기업 1개 선정,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제안과제 선정평가

- 예비선정기업 신청과제는 제안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 일시 및 장소 : '25. 2. 13.(목) 예정
 ※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별도 안내
- 평가방법 : 발표평가(과제별 20분 /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위원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제안 아이템 분야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평가위원 위촉
- 선정기준
 - 수요조사 신청과제의 세종 진흥전략·계획 부합성('24년 수립), 사업계획 적정성, 수행기업 역량 및 제안과제 우수성, 기대효과 등 제안서류 및 발표내용을 계량하여 평가
 - 100점 만점 기준으로, 최종 평가 점수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 최종 평가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산출

○ 평가지표

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사업 계획서 (40점)	목적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 지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10
	사업계획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디지털 산업 진흥전략·계획 부합성 -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정보보호, 디지털콘텐츠, 방송·영상·미디어, 양자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방향성과의 연계성 등 	10
	사업수행 능력 및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 지역SW산업기관(주관)의 과제관리·지원 역량, 참여사업 수행기관 역할의 적절성 및 전문성 	10
	목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목표관리의 도전성 및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공통 지표/중점 지원 목표/기타 목표 등 설계의 구체성 및 도전성 	10
기업 역량 (20점)	기술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개발 제품 기술 수준의 차별성 및 경쟁성 - 기술 차별성 및 혁신성, 대체기술 유무, 유사 중복성 	10
	선도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관 및 기업의 노력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특허 등 연구개발역량향상을 위한 기관 및 기업의 노력 - 매출 증가, 고용증대 등 성장 역량 향상을 위한 기업의 노력 	10
지원 프로그램 우수성 (30점)	성장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 - 기업 대내외 환경분석에 기반한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SWOT분석 등), 주요 고객·시장 분석의 타당성 - 기업 성장을 위한 추진 전략의 적정성 및 우수성 	15
	성과 파급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의 파급효과 및 적정성 - 신규시장 창출, 수출 증대 등 지역SW기업경쟁력 증대 효과 - 과제 종료 이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역SW산업 및 타지역 확산효과 	15
사업 관리 (10점)	관리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산출물·사업비·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적정성 - 일정·산출물·재무·참여 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의 적정성 -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 성과 분석,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 	10
총점			100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기간 : 공고일 ~ '25. 2. 11.(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제출처 : SW산업팀 이민우 전임연구원(minu1005@sjtp.or.kr, 044-850-3824)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부수	제출여부		비고
				주관	참여	
1	양식 제공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	○	○	양식작성
		사업계획서		○	○	양식작성
		수요기관(지자체 등)의 도입의사 협약서		○	×	양식작성
		선도기업 적정성 검토 확인서		○	○	회계사 날인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	양식작성
		사업협약서		○	○	양식작성
		연구개발인력 이력사항		○	○	양식작성
		NTIS 중복성 검토결과 사본		○	×	양식작성
		선도기업 배점기준 산출 결과 사본	○	○	별첨파일도 함께 제출 및 회계사 날인 필수	
2		사업자등록증(공고일 이후 기준)	1	○	○	원본 대조필 날인 (SW관련 분야 명시 필수)
3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기준)	1	○	○	원본 대조필 날인
4		SW사업자신고서	1	○	×	한국SW산업협회 SW사업자신고서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이후 기준)	1	○	○	-
6		4대보험 완납증명서	1	○	○	-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	○	○	'21-'23년 또는 '22-'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발급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증명)
8		최근 3개년 특허관련 서류	1	○	×	출원/등록서 (선도기업요건(특허접수) 증빙용)
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4년 12월 기준)	1	○	×	선도기업요건(연구개발) 증빙용
10		기업 홍보 동영상(1분 내외)	1	해당시		-
11		발표자료	1	○	×	PPT 또는 PDF (온라인 파일제출)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제출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기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로 선정 확정 및 협약 시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추정재무제표 제출 시 결산 회계법인 날인 필요

6 유의사항

○ 의무사항

- 주관기업 단독 및 컨소시엄 구성 가능(주관·참여기업의 50%이상 세종지역 기업참여) ※ 주관기업은 반드시 세종 지역 내 SW기업 이어야 함
- SW서비스개발 이외 하드웨어개발은 불가(단, 하드웨어 적용·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재료비·시제품 관련 투자비용은 총사업비(현금)의 20% 이내 산정가능)
- 과제 결과물을 명확히 정의
- 본 사업은 비R&D사업으로 지역 SW기업의 사업화를 주력으로 지원하며, 사업비 1억원 당 SW전문인력 1.3명 고용, 전년대비 매출증가율 9% 이상,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15% 이상, 사업화율 국비지원액 100% 의무 달성 필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공고에 따라 공통목표 변경될 수 있음
- 과제에 대한 회계정산 비용 산정 필수

○ 지원 시 유의사항

- 정부 예산 및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 참가 자격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 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출 후에 추가자료 요청은 있을 수 있음

○ 과제 중복성 검토 기준

- 융합 클러스터 수행 지역의 경우, 지역별 특화산업분야*의 중복성과 사업 간 연계성 고려 필수 (중복 분야 과제의 경우, 선정 제외) * 대구·제주(스마트시티), 세종(디지털콘텐츠)
- [참고] '15년~24년 타 지역 수행과제 리스트 참고하여 유사중복 과제 선정 제외
- NTIS 등 과제 중복검토결과 증빙 제출

○ 신청제외 등 유의사항

- 연구개발혁신 역량점수, 성장단계별역량점수 모두 3점 미만인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사업수행기관, 주관사업수행기관의 장, 참여사업수행기관, 참여사업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가능
- 정부에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함)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중복성 검토 후 제출(필수)
-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연속 영업이익적자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 의견이 "한정"

- 신규채용인력은 채용일이 과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인정
- 사업을 통해 발생된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용